

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0. . .
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기능을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기업사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기업사랑위원회 설치 조항에 ‘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’를 ‘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’로 수정함.

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시장이 된다”를 “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기업사랑위원회 설치) ① (생략)	제5조(기업사랑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	제5조(기업사랑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	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회 위원은 시의 회 의원,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, 법조계, 학계, 금융계,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위원회 위원은 시의 회 의원, 유관기관·단체장이 추천하는 자,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	③ (개정안과 같음)
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.	④----- ----- -----담당-----	④ (개정안과 같음)